

제 호

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

납부자	성 명(명칭)	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				
	주 소	(전화번호 :)				
당초부과결정의 통 지 번 호						
과오납 내 역	구 분	년 도	부과결정액	기 납부액	정당부과액	과오납액
	금 액					
	과오납사유					
환 급 내 역	구 분	년 도	당초부과결정액	기 납부액	변경부과결정액	환급액
	금 액					
	환급사유					
환 급 대 상	농지의표시					
	원상회복 여 부		년 월 일	※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		
환급가산금 산출내역						
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결정액		계	환급금	환급가산금	결 정 일	
					년 월 일	

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지사
시장 · 군수 · 자치구구청장

직인

납 입 자
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

유의사항

※ 납부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→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관리기금으로 귀속됩니다.